

중대재해처벌법 정착을 위한 새 정부의 역할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법이 제정되었고 올해 1월 27일 법이 시행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통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과 하한선이 있는 징역형을 도입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성과는 진일보한 면이 있다. 하지만 제정 당시 경영계의 로비와 정부의 관료적 판단 등으로 발주자 책임이 삭제되고 처벌 수위 및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대폭 낮아졌으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원안에 비해 후퇴 제정되면서 많은 과제를 남겼다.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시행이 무색하게 기업의 안전보건 태만 경영은 변함이 없고, 법 시행 이후에도 토사 붕괴 사고, 추락사고, 폭발사고 등 여전히 노동자들은 중대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기업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노동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기업들은 경제적 이윤이나 비용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이들의 안전을 위해 예산을 투자하고 안전보건 인력을 확대하는 등의 적극적인 산재 예방활동에 집중할 때다. 그런데도 최근 경총은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경영책임자의 정의 및 의무, 안전보건관계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골자의 내용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시행된 지 겨우 100일이 갓 넘은 법에 대해 경영계는 지속해서 산재 감소 효과 없이 현장 혼란이 심화하고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 경총은 언론을 호도하는 것을 넘어 지속해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과 다름없이 현재에도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기업들의 방만한 안전보건경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영책임자와 법인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서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기업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 감축 및 산재 예방에 힘써야 한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금년 5월 출범했다. 출범 전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노동 가치 존중’을 내걸고 노동정책을 제시했지만, 실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선이 크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에서 산업안전보건관계법령 개정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명확한 경우가 아니면 경영책임자에게 면책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에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와 유사하게 만들어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수사와 재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기업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노동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널리 보기

: 새 정부에게 바란다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시행된 지 반년도 안 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손댈 것이 아니라, 엄중한 법 집행과 더불어 기업의 산재 예방활동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에 대한 구체적인 연차별 이행계획이 공개되었는데, 정부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해야 할 일은 경영계의 입맛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사문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노사정이 합의한 수많은 산재예방대책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을 이행하는 것이다. 가장 최근에 합의했던 ‘경사노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합의문(2020)’만 보더라도 노사정이 큰 이견 없이 원하고 있는 정부 일반회계 확대 안건이 합의 이후 이행과정에서 후퇴하고 전진이 없는 등 합의 자체의 무용론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성과와 치적을 위해 실질적인 이행 없는 합의만 반복하고 노사가 들러리만 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날의 합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여 산재 예방에 전진이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24년 1월에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초체제 전반에서 보호의 범위 밖에 놓여있는 실정이며 법규를 준수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다. 하지만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사전 대비가 전무한 실정이며 법 시행 후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도 정부의 뚜렷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대상에 포함되는

정부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해야 할 일은
경영계의 입맛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사문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노사정이
합의한 수많은
산재예방대책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을
이행하는 것이다.





2024년에 대비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효과적이고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해설서 또는 가이드북 배포 등의 간접적인 지원보다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일반회계 비용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재정·기술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산재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과 투자 확대 등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하며 노동자도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노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는 대립적 노사관계 틀에서 탈피하여 사업장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한국노총은 올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교육, 홍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업에 집중할 것이다. 또한, 후퇴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되살리기 위해 경영책임자 정의를 바로 잡고,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법 개정 활동에도 더욱 힘을 기울일 것이다. 🙌